

4. 자가 격리 대상자 관리

담당	역할	비고
모니터링 담당자	① 자가 격리 대상자 안내 : 학교 홈페이지 ⇒ 공지사항(신라광장) ⇒ 코로나19 ⇒ 공지확인 ② 격리 대상자 매일 모니터링 실시 ⇒ 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지【붙임2】제출 ▶ 공인 출석 요청 시 【붙임1】+【증빙자료】 공문 ③ 매일 『학생 : 해당 기간 동안 담당자 유선 확인 매일 『교원, 교직원 : 자각 증상 발현 시 담당자 직접 보고 ④ 『증상 발현 시 : 즉시 의료지원실 통보 『무증상 시 : 모니터링 일지【붙임2】 부서장 결재 후 이메일 제출 의료지원실 권미애 stuoff_c1@silla.ac.kr	♣학생지원팀 ☎999-5226~7 ♣의료지원실 ☎999-5326 * 붙임자료 : 자가격리행위서 (보건당국 이관)
감염예방실 (인문관 114호)	① 코로나 19 증상 문진표 작성【붙임15-①】 a 이상 소견 시: 보건소 신고 b 모니터링 담당자 조치사항 보고 c 보건소 연계 ② 의심환자 동선 연무 소독 및 표면 접촉 부위 소독 의뢰 ③ 의심환자 진단 검사 결과 확인 a 양성(확진): 사전조사 및 조치 및 보건 당국 조치 협조 b 음성 『보건당국- 자가 격리 자: 보건당국 관리 『유증상자- 자가 보호 조치: 의료기관 방문 권고 ▶의료기관 방문 후【붙임1】	♣사상구보건소 ☎310-4822 ☎310-4791
시설운영팀	① 의심환자 동선 연무 소독 후 환기 ② 의심환자 진단 검사 결과 양성(확진) 경우 : 전문 소독 업체 의뢰 ③ 보건소 소독 담당자 소독 필 증 전송	소독 지침 준수 (최신판 확인 요) 【붙임9】 ☎999-5094
관리팀 (미화)	① 연무 소독 완료 후 환기 확인 후 ② 문고리, 책상, 바닥, 책장, 컴퓨터 등 접촉 부위 표면 소독	소독 지침 준수 (최신판 확인 요) 【붙임10】【붙임21】 ☎999-5530

5. 자가 격리 기간 분류

구분	역할	비고
유증상자	「코로나 예방 행동 수칙 준수」 기본 수칙으로 증상 발현 시 학교 출입 하지 말고, 3~4일간 자가 격리 하면서 경과 관찰 ▶ 학교홈페이지⇒공지사항(신라광장) ⇒코로나19 ⇒공지확인 ▶ 부서 장 보고⇒ 재택근무 또는 연가사용 권고 【붙임13-①】 ▶ 학과(부) 보고⇒온라인수업, 시험, 과제 등 대처 마련 또는 공인 출석 요청 【붙임1】+【증빙자료】 공문. ※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 없다고 진단 한 경우 학교출입가능 (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1)	<문 의> ♣학생지원팀 ☎999-5226~7 ♣의료지원실 ☎999-5326 <관련 법안> ·고등교육법 제27조의2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·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1 등교 등 의 중지 ·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의2 감염병 예방 대책의 마련 등 ·학교보건법제8조 등교중지
확진환자	코로나19 치료 후 음성 판정 받고 퇴원 후 14일간 자가 보호 ⇒ 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지 【붙임1 또는 2】 꼭 제출 1)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 없다고 진단 한 경우 학교출입가능 (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1) 2)보건소로 부터 격리 해제 확인서 발부	▶퇴원 후 14일간 출근 또는 등교 여부 확인 ·학생 :학과 사무실 ·교원, 조교: 학과(부)장 ·교직원: 부서 장
확진자와 접촉자 또는 접촉자의 접촉자	① 동선지 접촉 보건당국 문자 또는 유선 연락 접촉자인 경우 ▶ 모든 업무 일시 중지 ⇒ 보건소 문의 ⇒ 지시에 따름 ⇒코로나 검사 실시 할 경우 가기 전 ⇒ 학교 통보 ② 가족확진 밀접접촉자 분류 보건당국 문자 또는 유선 연락 ▶ 모든 업무 일시 중지 ⇒ 학교 통보 ⇒ 보건당국 지시 따름 ③ 밀접 접촉자 분류 (코로나 검사 음성) 1) 자가 격리: 역학조사 후 보건당국 지시에 따름 2) 능동감시대상자: 방역 수칙 준수 필수, 밀집 지역 출입금지 ⇒ 격리 대상자 모니터링 지 【붙임1 또는 2】 꼭 제출 ·학생 : 확진자 접촉 일 기준 14일간 학교 출입 금지 권고 ⇒ 수업 대처 방안 (원격 매체 수업, 시험 등 또는 공결) ·교직원, 교원, 조교, 연구원 :부서장 재량으로 재택근무 권고	<관련법안> ·고등교육법 제22조 (수업 등)

< 자가 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>

▶ **내국인 : 벌금 1천 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**

- 진단검사 후 귀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활동을 한 후 확진된 경우(포함)
-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(행 안 부)
-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(경찰) - 손해배상 청구 검토(법무부)

▶ **외국인 : 무단이탈 등 자가 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(법무부)**

-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(One-Strike Out)
-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 시설격리 조치(자치체 판단에 따라 시설이용 비용을 부담)

※ 법적근거: 출입국관리법 제11조(입국의 금지), 제46조(감제퇴거의 대상자), 제47조(조사), 제68조(출국명령), 제78조(관계기관의 협조), 제89조(각종 허가 등의 취소·변경) 등

6. 유증상자 교육

【보건교육】

- **자제해야 할 일**
 - 외출(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등)
 - 타인과의 접촉
 - 대중교통 이용
- **해야 할 일**
 -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 강조, 기침예절 준수【붙임23】
 - 타인과 대화 시 2m 간격 유지하고 간격 유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【붙임22】
 -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방문력, 국내 집단발생 관련여부, 직업 등 알리기
 -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☎ 1339, 지역번호 +120)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

7. 제출서류 (병가, 공가 또는 공인 출석 요청 시)

- ▣ 본인 확진(양성) 경우 : 입원 확인서, 입원 격리 통지서, 격리해제 확인서(보건소장)
- ▣ 거소 같은 가족 확진 경우(자가 격리 자): 격리통지서 +【붙임2】결제 보고 및 제출
- ▣ 밀접 접촉자가 격리 (보건당국): 격리통지서 +【붙임2】모니터링 담당자 결제 보고 및 제출
- ▣ 밀접 접촉자 분류 격리 동거인 가족: 가족격리통지서+【붙임2】제출 + 가족관계증명서
- ▣ 유증상자 ①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+ 【붙임1】+모니터링 담당자 【붙임2】결제보고 제출

②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

(※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 우려 없다고 진단 한 경우 (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1))